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개선방안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23. 9. 12.

Free Market
Free Enterprise
Free Competition



Contents

I. 현황 및 개편 필요성

II. 상속세제의 국제 비교

III. 기업승계 상속세제 개선방안

1. 현황

- ◆ 2020년 삼성家の 상속 이후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음
 - 상속된 주식은 당시 시가로 약 18조 2천억원이며, 이를 승계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만 약 11조원에 달함
 - ✓ 약 1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액을 당장 현금으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6년에 걸쳐 매년 약 2조원을 부담
 - 배당 확대도 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지나친 배당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주식 매각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경영권 승계 및 방어가 어려울 수 있음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과 실효성 없는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기업승계 포기 사례가 늘었음

쓰리세븐(손톱깎이 생산업체, 당시 세계 1위)은 지난 2008년 150억원의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고, 유니더스(콘돔 생산업체, 세계 1위)는 5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으며, 락앤락(밀폐용기 제조업체, 국내 1위)은 생전 상속세 부담을 고려하여 2017년 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음

과도한 상속세 ... 정부가 넥슨 2대 주주로

<지주사 NXC>

정부가 기업가치 25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NXC 지분 30%가량을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관련기사 A5면

NXC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

故 김정주 유족, 지주회사 지분 29.3% 물납 최대주주 할증편 상속세율 60% 'OECD 최고'

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내는 것이다. 세무당국의 가치 평가를 거쳐 주무부처인 기재부로 물납재산이 이전됐다. NXC는 넥슨 본사인 넥슨 일본법인 지분 29.3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정부가 시가총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그룹 지주사의 2대 주주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김 창업자의 유산이 10

조원대 초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6조원대로 추산된다.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붙으면서 상속세율이 60%에 달했다. 상속세도 이견회 회장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 등 삼성 일가 유족이 낸 상속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60%는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김 창업자 유족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유족이 물납을 통해 가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최대 게임업체가 중국 등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상속세율을 낮추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민/이승우 기자

朝鮮日報

2023년 6월 1일 목요일 B03면 경제종합

넥슨 지주사 지분 30% 상속세로... 정부가 2대 주주 됐다

故 김정주 가족, 역대 2위 상속세 6조원을 주식으로 납부

지난해 2월 별세한 넥슨의 고(故) 김정주 창업자 유족이 물려받은 넥슨 지주회사(NXC) 지분 30%가량을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NXC는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여 주를 보유하게 돼 회사의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지난해 9월 김 창업자의 유족은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주식으로 납부한 것이다. 김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

에 달했고, 상속세도 고 이견회 회장 유산 상속 과정에서 삼성가 유족이 낸 상속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둘째로 많다. ◇역대 둘째 수준 상속세, 결국 지분으로 물납 NXC는 김 창업자가 지분 약 67%, 가족(아내·두 딸)과 가족회사(아이즈키즈) 배우자·두 딸 지분 98%→69%로 경영권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돼 기재부 시총 24조 기업 2대 주주 입각 "질병적 상속합중 폐지"를

해 약 10조원이었다.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 주주 할증까지 붙으면서 상속세율이 65%에 달했다. 김 창업자 두 딸의 주식을 상속세로 물납하면서 최대 주주인 유정현씨의 지분에는 변동이 없고, 두 딸 지분이 각각 16.81%로 줄었다. 유 이사는 NXC의 최대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NXC 관계자는 "물납 후에도 유 이사를 비롯해 두 딸과 가족회사가 70%에 상당하는 지분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NXC는 비상장 회사라 정부 입장에서 지분 매각이 쉽지 않다"며 "김 창업자의 부재 이후 넥슨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았는데, 정부

엔엑스씨(넥슨 지주회사) 지분구조

2021년 5월 기준



2023년 5월 현재



2. 국제적 추세

- ◆ 우리나라는 2000년 상속세율 및 과표 구간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스웨덴(2005년), 체코(2014년) 등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상속세를 완화·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 상속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인식 하에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보다 유용하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15개국은 폐지 또는 미도입
 - ✓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주로 피상속인의 미실현된 자본이득을 상속인이 처분할 때 과세하도록 이연함
 -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3개국,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5개국인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중, 직계비속에게 상속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국가는 14개국이며 이 중 4개국은 상속세가 면제됨
 - ✓ 따라서 현재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9개국임

3. 개편 필요성

- ◆ **기업승계 문제가 선결되어야 경영 의욕도 높아지고 기업의 존속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텐데, 지금 상속세제 하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승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상속세가 차지하는 전체 국세 비중(약 2.1%, 2021년 기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강화된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음
 - 기업은 승계시 상속세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재투자보다는 기업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의 성장동력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 **결국 상속세의 중(重)과세는 조세수입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여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과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 이제는 경제의 토대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 최근 세제개편안 중 상속증여세 부분은 대기업이 제외되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Contents

I. 현황 및 개편 필요성

II. 상속세제의 국제 비교

III. 기업승계 상속세제 개선방안

1. 상속세제 비교 (최고세율)

◆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와 관련해서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2위이고,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1위로 국제적 비교 측면에서 매우 과중한 수준임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 최고세율 약 25%의 2배에 달하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하여 과세,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될 수 있음
 -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제도 없음

| 구분 | 한국 | 미국 | 일본 | 영국 | 독일 |
|-----|------------------|---------------|--------|---------------|----------|
| 대상 | 최대주주 (상장·비상장) | 개별주식 | 지배주주 | 소액주주 | 소액주주 |
| 할증율 | 20% (중소기업 0%) | 사안별 할증, 할인 | 사안별 할인 | 사안별 할증, 할인 | 10% 할인평가 |

-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7%로 OECD 국가 중 첫번째로 높음(벨기에, 프랑스와 공동 1위)

1. 상속세제 비교

◆ 상속세 최고세율 및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비교 (단위: %)

| 구분 | 상속세 최고세율 | |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2021년 기준) |
|-----|-------------------------------|---------|--------------------------------|
| | 직계비속 | 제3자(일반) | |
| 벨기에 | 30 | 80 | 0.7 |
| 프랑스 | 45 | 60 | 0.7 |
| 일본 | 55 | 55 | 0.5 |
| 한국 | 50 *최대주주할증적용시 '60%'에 달함 | 50 | 0.7 |
| 독일 | 30 | 50 | 0.3 |
| 영국 | 40 | 40 | 0.3 |
| 미국 | 40 | 40 | 0.1 |

자료: OECD Statistics.

2. 상속세제 비교 (상속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 ◆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해보면 일본(100%) 다음으로 2위(95%)인데 기업승계시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소득이 누적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중과세 측면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그 반대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위,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음
 -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올리고 있어 전체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 최근 3차례 인상(2016년 38% → 2017년 40% → 2018년 42% → 2021년 45%)

2. 상속세제 비교

◆ 상속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단위: %)

| 구분 | 최고세율 | | |
|------|-----------------------------|-----|-------------|
| | 상속세(직계비속) | 소득세 | 상속세+소득세 |
| 벨기에 | 30 | 50 | 80 |
| 프랑스 | 45 | 45 | 90 |
| 일본 | 55 | 45 | 100 |
| 한국 | 50 · 최대주주할증과세 적용시 60% | 45 | 95 (105) |
| 독일 | 30 | 45 | 75 |
| 영국 | 40 | 45 | 85 |
| 미국 | 40 | 37 | 77 |
| 네덜란드 | 20 | 52 | 72 |

자료: OECD Statistics.

3. 상속세제 비교 (가업상속공제)

- ◆ 1997년부터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이 한정적이고, 요건이 엄격해서 활용이 저조함
 - 우리나라는 적용대상을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했고,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나 상속인의 가업종사·대표자취임 등 엄격한 적용요건 및 가업·고용 유지 등 사후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부분의 해외 가업승계세제지원(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은 모든 기업이 그 대상이며, 대부분의 적용요건이 우리나라보다 완화되어 있고 사후관리기간도 우리나라(5년)보다 짧거나 비슷함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제한도(가업영위기간),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은 외국의 유사 제도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워 활용도가 저조함

3. 상속세제 비교

◆ 주요국의 기업상속공제 제도 비교

| 구분 | | 한국 | 독일 | 일본 | 영국 |
|--------------|------------|--|---|--|--|
| 사전 요건 | 적용 대상 |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심사 · 자산 5천억원 이하 중소기업 | <기업규모 제한 X> · 자산 2,600만유로 초과 기업 은 필요성 심사 절차 | · 비상장 중소기업 | X |
| | 피상속인 요건 |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종사 · 지분 40%(상장 20%) 이상 | · 피상속인 및 조합원 합산 25% 이상 | · 승계회사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의결권 50% 초과 보유 | ·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 |
| | 상속인 요건 | · 2년내 가업종사 및 대표자 취임 | X | · 피상속인의 친족, 상속개시 직전 임원,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내 대표 취임 · 최대주주, 의결권주식의 50% 초 과 보유 | X |
| 기업상속 공제금액 | | · 주식, 사업자산 등 가액 100% · 한도: 300억원(10년이상), 400억원 (20년이상), 600억원(30년이상) | · (85%공제) 비사업용자산 50% 이하, (100%공제) 비사업용 자산 10% 이하 · 자산 2,600만유로 초과시 75 만유로당 1%p씩 공제율 감소 (9천만유로가 최대) | · 발행주식총수의 2/3 한도(특별 조치: 공제상한 없음) · 비상장주식의 80% 상속세 유예 (특별조치: 전부) | · 100%: 비상장주 식, 사업 관련 지 분 · 50%: 상장주식, 토지, 건물, 설비 등 |
| 사후관리 | | · 사후관리기간: 5년 · 가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중분류내 변경 허용) · 가업자산 40% 이상 처분금지 · 지분유지 · 고용유지: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50년 평균 90% | · ① 85% 공제요건 - 5년 이상 가업 및 고용유지 (급여총액 5년간 400% 이상) · ② 100% 공제요건-7년 이상 가업 및 고용유지(급여총액 7 년간 700% 이상) | · 상속 후 5개월내 대표이사 취임 및 이후 5년간 대표직, 상속지분 유지 · 근로자 수 80% 이상 5년간 유지 (예외 및 탄력 적용가능) | X |

3. 상속세제 비교

- ◆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1년 연평균 이용건수가 95.7건, 총 공제금액 2,967억원으로 저조한 상황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0,308건, 공제금액 163억유로(한화 약 24조원)에 달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적용건수가 독일보다 100배 이상 적은 수치임

| 구분 | 한 국 | | 독 일 | |
|-------|------|---------------|--------|-------------------|
| | 건 수 | 공제금액 (백만원) | 건 수 | 공제금액 (1,000유로) |
| 2016년 | 76 | 318,378 | 10,636 | 21,424,522 |
| 2017년 | 91 | 222,598 | 9,260 | 20,387,105 |
| 2018년 | 103 | 234,421 | 8,773 | 11,634,555 |
| 2019년 | 88 | 236,343 | 9,263 | 12,022,511 |
| 2020년 | 106 | 421,049 | 12,043 | 7,688,724 |
| 2021년 | 110 | 347,505 | 11,874 | 24,759,638 |
| 평 균 | 95.7 | 296,716 | 10,308 | 16,319,509 |

자료: 국세통계연보, Finanzen und Steuern(Erbchaft- und Schenkungsteuer).

3. 상속세제 비교

◆ 최근 세법개정시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

- [2022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만 한정적으로 확대,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했음
- [2023년] 업종유지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할 예정임(저율과세 10% 구간 60억원에서 300억원 이내로 확대)

| 구 분 | | ~ 2022년 | 2022년, 2023년 세법개정안 |
|----------------|--------|--|---|
| 적용대상 | |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 피상속인 지분 | | 50%(상장법인 30%) 이상 | 40%(상장법인 20%) 이상 |
| 공제한도 | | 200억원(10년이상), 300억원(20년이상), 500억원(30년이상) | 400억원(10년이상), 600억원(20년이상), 1,000억원(30년이상) |
| 사후 관리 요건 | 기간 | 7년 | 5년 |
| | 업종유지 | 중분류 내 | <u>대분류 내 (2023 세법개정안)</u> |
| | 고용유지 |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80%+7년 평균100% |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5년 평균 90% |
| | 자산처분금지 | 20%(5년 이내 10%) | 40% |

4. 실제 기업승계 사례의 세부담 국제 비교

- ◆ 18조 2천억원의 상장주식을 상속한 경우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58%를 넘어 가장 높고, 일본(55%), 미국(39.9%), 독일(30%), 영국(20%) 순으로 나타남
 - 자본이득세 과세국가 중 캐나다는 상속시 16.5%의 실효세율을 보이고,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과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상속시 과세되지 않음
 - '우리나라'는 30억원 초과시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자산에 대해 20% 할증평가됨. 인적공제는 최대 30억원, 신고세액공제는 3% 적용됨
 - '미국'의 상속세는 백만달러 초과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통합공제액은 1,292만달러(약 168억원)까지 공제됨
 - '일본'의 상속세는 6억엔(약 60억원) 초과시 55%의 세율이 적용되며, 기초공제액 3천만엔에 상속인 수당 6백만엔을 합한 금액을 공제함. 법인용 사업승계세제는 비상장기업에만 적용됨

4. 실제 기업승계 사례의 세부담 국제 비교

- '독일'의 상속세는 친인척 수준에 따라 법정세율이 달라지는데, 1그룹(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등)에 대해 2,600만유로(약 340억원) 초과시 최대 30%까지 과세되고, 인적공제와 특별생계비공제가 적용됨. 기업상속공제는 9천만유로(약 1,179억원)이상 사업관련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영국'의 상속세는 32만5천파운드(약 5억4천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금액은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자산공제는 상장주식의 50%까지 적용됨
-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서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포함률 50%를 적용하고 214,369캐나다달러(약 2억1천만원) 초과시 최대 3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호주'는 1979년 상속세 폐지 후 1985년 자본이득세로 대체했고,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했으며 자본소득은 3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 상속처럼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상속인이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함

4. 실제 기업승계 사례의 세부담 국제 비교

| 구분 | 상속세 과세 | | | | | 자본이득세 과세 | |
|-------|--|------------------------------|------------------------------|---|--|----------|-----------------------------|
| | 한국 | 미국 | 일본 | 독일 | 영국 | 캐나다 | 호주, 스웨덴 |
| 과세대상 | 18.2조원 × 1.2 (최대주주할증 평가 20%) | 18.2조원 | 18.2조원 | 18.2조원 | 18.2조원 | 18.2조원 | 18.2조원 |
| 공제 | 30억원 (인적공제 최대액) | 168억원 (통합공제, 1,292만달러) | 5억4천만원 (기초공제, 5,400만엔) | 22.6억원 (인적공제 4인, 170만유로), 3억8천만원 (특별생계공제, 286,900유로) | 5억4천만원 (비과세부분, 32만5천파운 드), 사업자산공제 50% | 포함률 50% | - |
| 세율 적용 | 50% | 40% | 55% | 30% | 40% | 33% | - |
| 총 세액 | 10조9,180억 원 - 3,275억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10조5,905억 원 | 7조2742억원 | 10조96억원 | 5조4592억원 | 3조6399억원 | 3조30억원 | - (추후 상속인이 처분시 과세) |
| 실효세율 | 58.2% | 39.9% | 55.0% | 30.0% | 20.0% | 16.5% | - |

* 해외 대기업 경영권 승계 사례

- ◆ [미국 Ford] 포드재단(공익재단)에 대한 주식(보통주) 출연과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으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권 유지
 - 차등의결권(Class B)은 1주당 16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Class B를 Ford 가문이 소유
- ◆ [스웨덴 발렌베리] 지주회사(Investor AB)를 설립해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소유권 확보
 - 차등의결권제도를 통해 A주 1주는 B주 10주와 같은 의결권을 갖게 되므로 발렌베리 재단이 가진 지주회사 지분은 23%에 불과하지만 의결권은 50%임(2020년 기준)
 - 또한 공익재단을 통해 승계가 이루어져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었음
 - 발렌베리의 지배구조가 가능했던 건 노사정 대타협(샬트세바덴 협약) 때문임
 - ✓ 기업 오너는 상속세 없는 공익재단 출연, 차등의결권 등을 허용받는 대신 고용을 지키며 수익 대부분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 ✓ 현재 발렌베리 재단은 배당수익의 80%를 과학기술, 의료, 대학연구사업 등 사회에 환원하고, 20%만 계열사에 재투자하고 있음



Contents

I. 현황 및 개편 필요성

II. 상속세제의 국제 비교

III. 기업승계 상속세제 개선방안

1.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

- ◆ OECD 2위의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
- ◆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만드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
 - 상속재산의 감소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가정신 약화 우려
 - 경영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주식 할증평가는 경영실적, 성장잠재력, 대외 위험도,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할증률의 적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현행 할증과세 방식은 과세근거가 취약함
- ◆ 엄격한 사전, 사후 요건으로 인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유명무실화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대표자 경영기간,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아서 큰 의미가 없음
- 기업승계시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의 변동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기업승계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참고> 미실현이득에 대한 3가지 과세방안

- ◆ **상속 사유로 무상이전이 발생한 경우 피상속인의 미실현이익, 즉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적용됨**
 - ① 무상이전시점에 자본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방안 (Transferas-Realisation Basis)
 - ② 무상이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이 실제 그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자본이득세를 이연(移延)하고,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이후 총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Carry-Over Basis)
 - ③ 피상속인 단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은 시장가격으로 그 자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상속인(상속세 납부)은 상속을 받은 이후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Step-Up in Basis)
 - *상속세가 부과시 사망시점까지 자본이득 실현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에 왜곡 발생(동결효과)
- **현행 방식 대신 ①번 과세방안을 적용하면 동결효과를 없앨 수 있지만, 상속인은 자본이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주식 등)을 처분해야 하므로, 기업승계의 경우 ②번 과세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경영권) 승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임**

2. 개선방안 제언

- ◆ 부진한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 중요시 되는 현재 시점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징벌적 상속세' 장애요인은 해소되어야 함
- ◆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임
 -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 국제조세 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고려할 때,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되어야 함
 - 윤석열 대통령도 2021년 12월 상속세와 관련하여 "스웨덴이나 독일의 상속제도를 잘 벤치마킹해서, 근로자의 고용보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음
 - ✓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했으며 자본소득은 3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2-1. 상속세율 인하

◆ 1) 근본적인 개선방안 (상속세율 인하)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법적으로 재산이 축적되었을 거라는 것과 '상속은 불로소득' 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한 국부유출, 고용 감소, 성장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간과
 - 이에 따라 세율은 사실상 세계최고 수준이며, 기업에게 사망선고하는 것과 같음
 - 또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인 상속세율을 더욱 과중하게 만들어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걸림돌로 작용**
-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 해야 할 것이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2-1. 상속세율 인하

◆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 현행 | | 개정 |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10% | 10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 |
| 30억원 초과 | 50% | 30억원 초과 | 30% |

2-2.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 확대

◆ 2) 단기적인 개선방안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 적용대상 확대)

-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매우 낮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
 - ✓ 2022년 세법개정에서도 일반 대기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만 5천억원으로 확대했고, 사전요건은 지분율만 10%p 완화했을 뿐임. 다만,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요건(업종변경, 자산유지, 고용유지 등)을 완화하려는 점은 바람직한 방향임
 - ✓ 또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가업상속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했지만, 중소기업만 적용하는 문제와 추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한번에 과세된다는 문제가 있음
 - 연부연납 제도도 가업상속공제 적용기업에만 10년에서 20년으로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적용받을 수 없음
-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연부연납 기간도 연장해서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압박을 해소해줘야 함

2-3. 기업상속주식 자본이득세 도입

◆ 3) 장기적인 개선방안 (기업상속주식 자본이득세 도입)

- 가업상속공제의 부분적인 보완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 보장을 위해 기업승계 관련 주식의 전면적인 자본이득세 도입**을 고려해야 함
 - ✓ 주요 외국은 차등의결권주식 발행,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한 또는 금지되어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려움
-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주식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임**
-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함**
 - ✓ 주식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사전·사후요건도 실효성이 없는 현행 가업상속공제보다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음

2-3. 기업상속주식 자본이득세 도입

◆ 기업상속주식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방안

| 구 분 | | 자본이득세 도입방안 |
|------|--------------|---|
| 요건 | 적용대상 | ·모든 기업 |
| | 기업 및 피상속인 | <가업영위기간> · 5년 이상 경영,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종사 <지분율> · 30%(상장 15%) 이상(특수관계인 포함) |
| 지원방법 | | <과세이연> · 상속 시 주식 비과세 · 대상주식 처분 시 자본이득 과세 |
| 사후관리 | | <사후관리기간> 5년 · 가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 폐업 금지, 자산 50%이상 처분금지 - 업종 유지 요건 폐지 · 지분유지 · 고용유지: 총급여기준 매년 90% (대기업 100%) |

감사합니다